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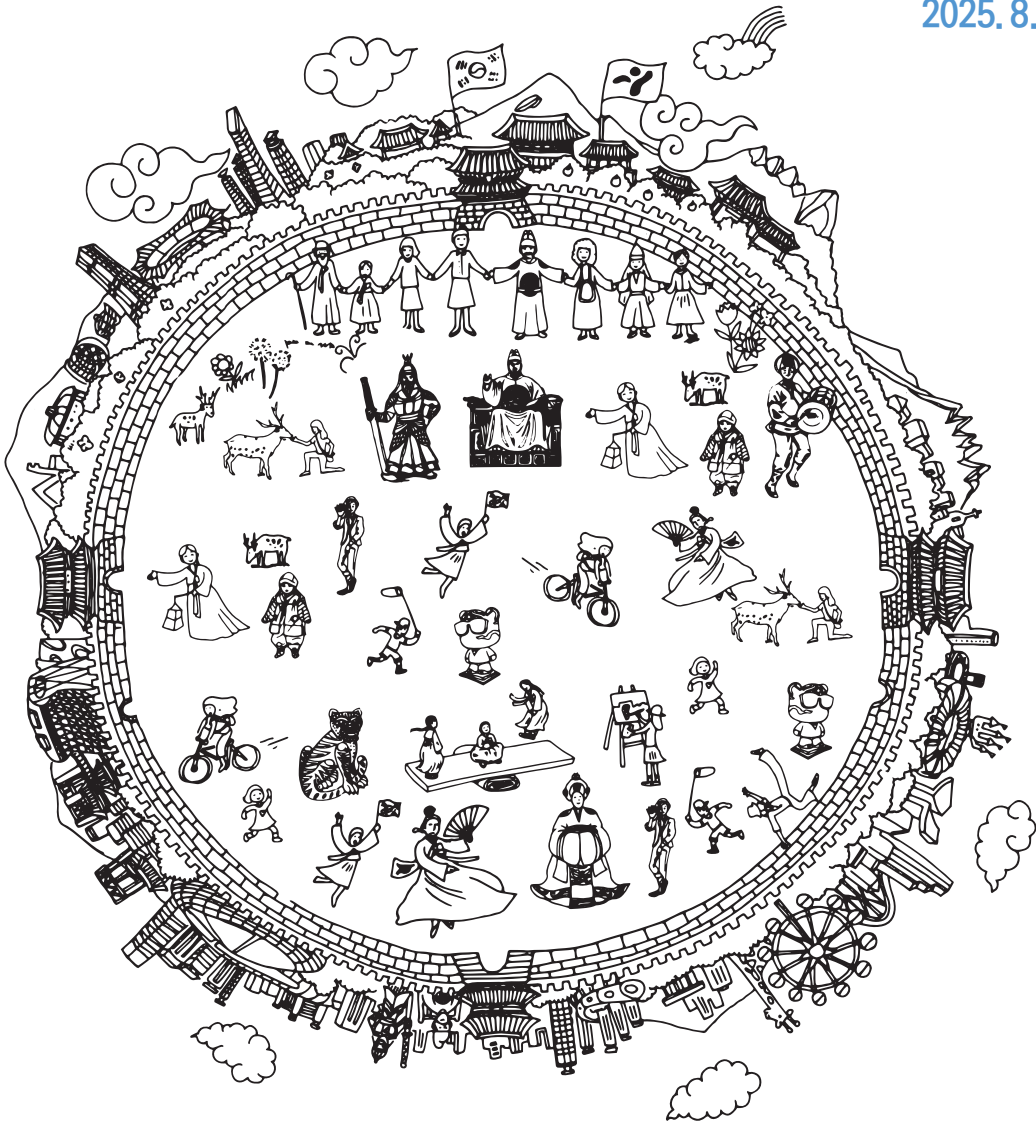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90호
2025. 8. 29.(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2582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5-486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6

◆ 공 고

제2025-2592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3

제2025-260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15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582호****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폐지(안 제7조제1항제5호)

- 기존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에서 수행하던 사회공헌 업무를 시립대학교 하부조직인 ‘기획처’ 의 ‘대외협력과’ 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 연계 강화

나. AI·SW융합교육원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부속기관인 AI·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여 첨단분야 인재 양성 강화

다.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제7호)

- 명칭을 변경하여 건강·체육 전반의 정책 기능을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cbchan21@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025-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후단 중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AI·SW융합교육원
- 7. 스포츠건강진흥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총장) ①·② (생략)	제3조의3(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u>교육공무원법</u> <u>임용령</u> 」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 --. ----- ----- ----- 「 <u>교육공무원임용령</u> 」 제12조의2-----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u>	5. <u>AI·SW융합교육원</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체육관</u>	7. <u>스포츠건강진흥원</u>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86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5년 제4차(8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제한면적(㎡)	선정여부	비고(이력)
1	영등포구	-	도림동 133-1일대	63,654		-
2	강북구	-	미아동 159일대	37,709		-
3	마포구	-	아현동 331-29일대	18,272		-
4	용산구	용산1	용산동2가 1-1351일대	43,016		-

※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 또는 수시모집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마.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의 선정구역으로 변경

(既往지정된 구역의 건축제한 기간에는 변동 없이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유지됨)

2. 건축허가 등 제한 변경(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수시모집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안) : 아래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연번	자치구	구역명 (가칭)	위치	기 제한 면적(㎡)	금회 제한 면적(㎡)			제한기간	선정 여부
					합계	확대	제적		
1	동작구	사당15	사당동 419-1 일대	134,608	133,007	6,385	7,986	변경 없음 (2024.11.21. ~ 2026.11.20.)	
2	종로구	창신9	창신동 23-606 일대	133,846	143,148	13,046	3,743	변경 없음 (2023.01.17.~2026.01.16.)	
3	종로구	창신10	창신동 629 일대	81,371	92,190	12,306	1,487	변경 없음 (2023.01.17.~2026.01.16.)	

※ 동작구 사당15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9호 참고

※ 종로구 창신9구역, 창신10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8호, 제2025-46호 참고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보류)구역

1) 제한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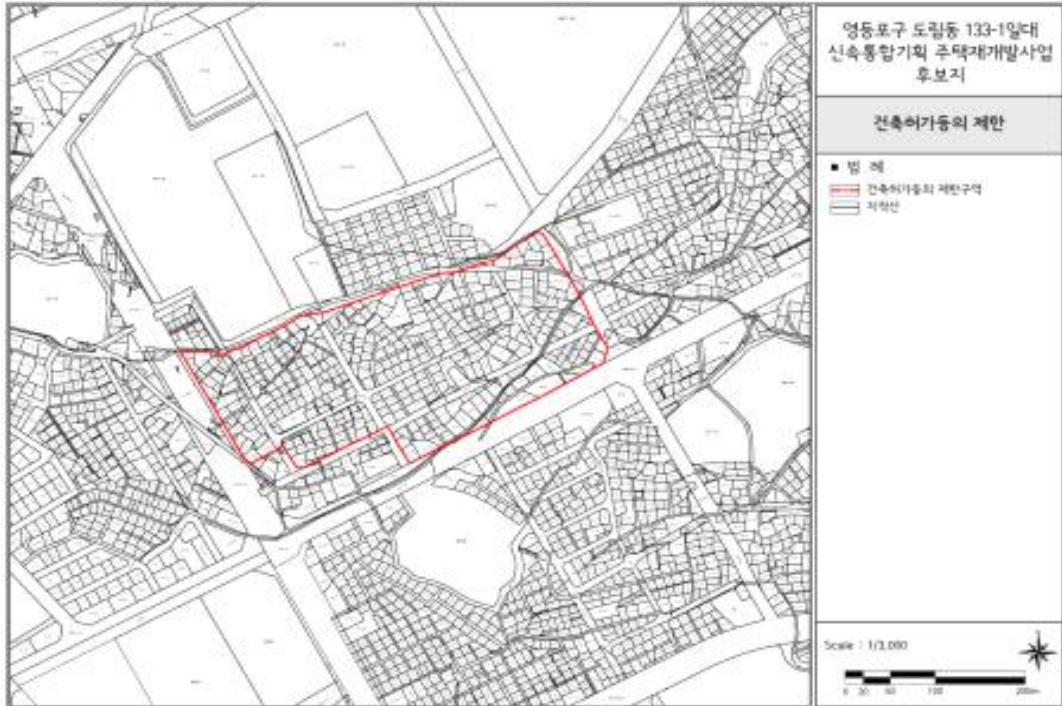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

○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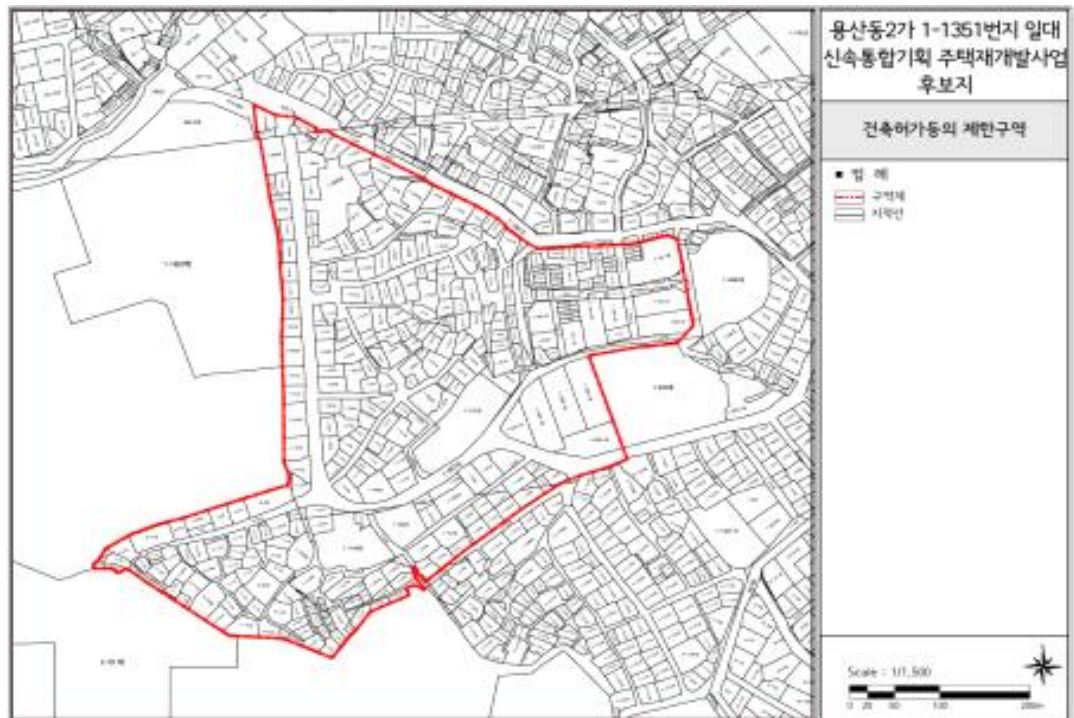
○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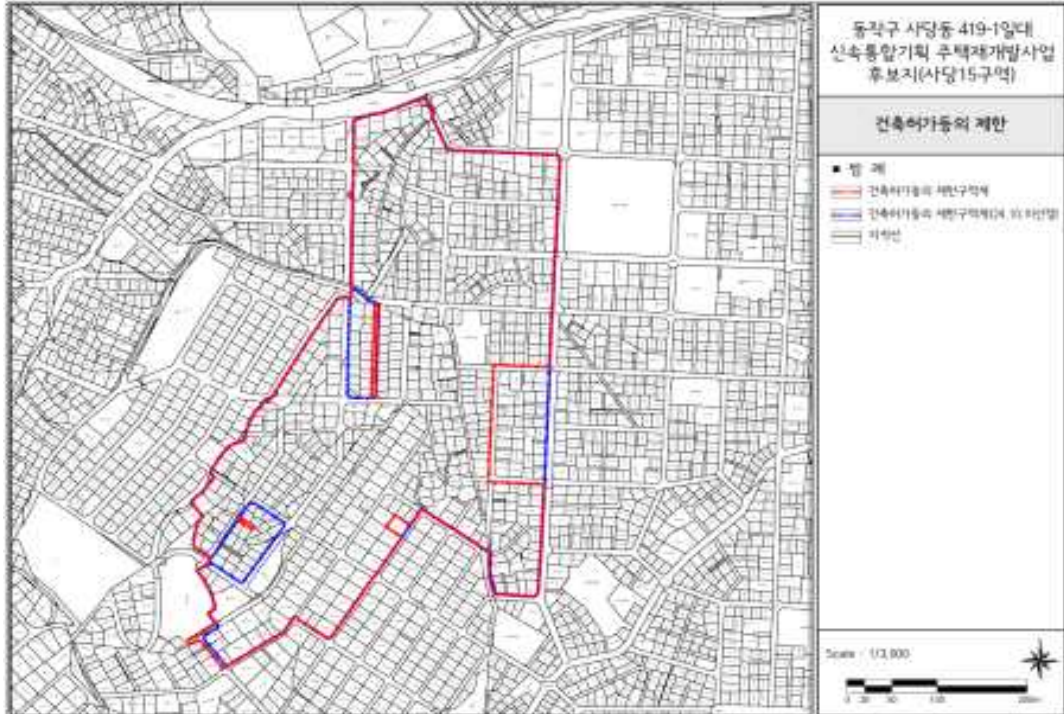
○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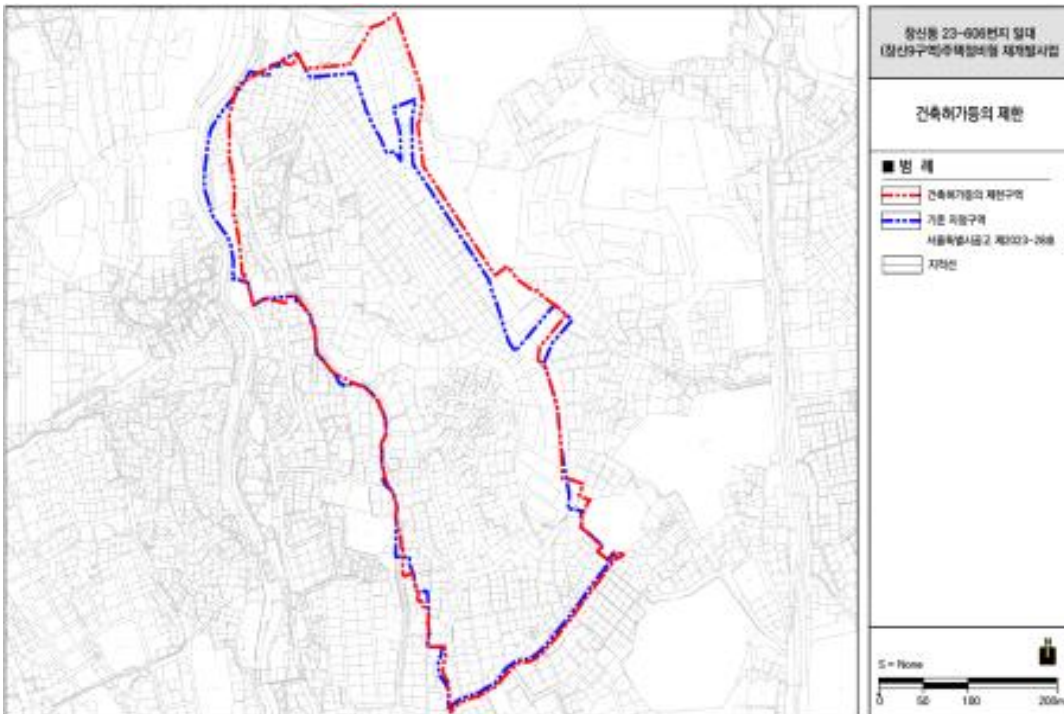
○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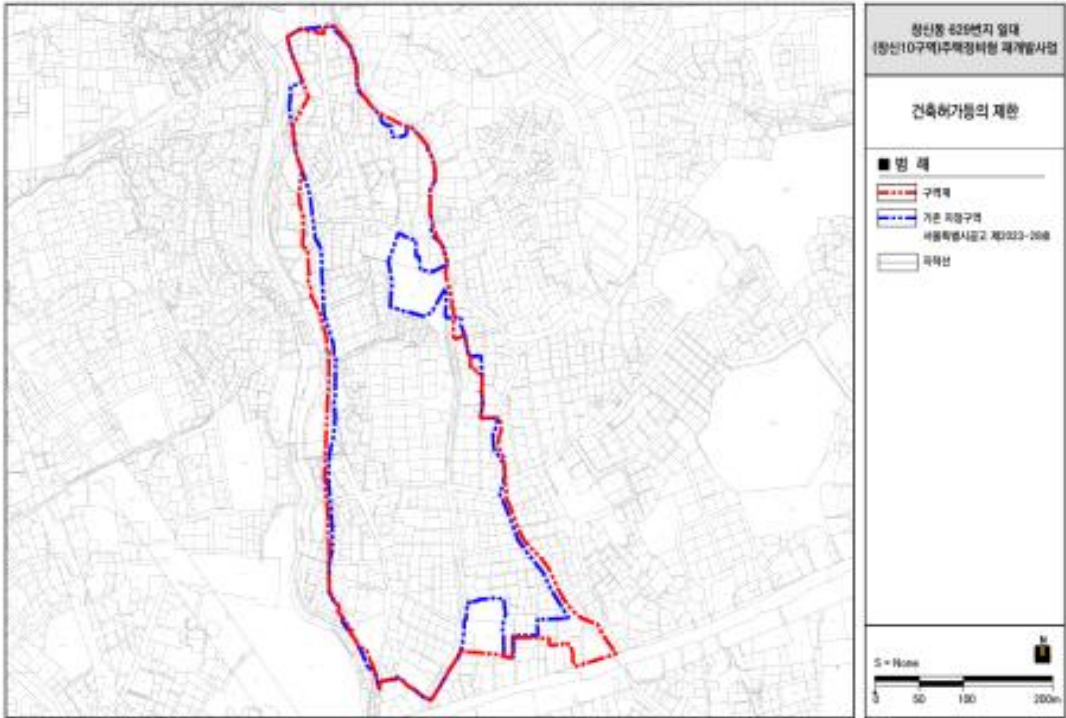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 종로구 창신동 23-606 일대



○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592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02.1.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09.12.10.)로 결정(변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으로 변경(재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 (☎ 2133-8644, fax: 2133-0828)
종로구 건축과 (☎ 2148-2812, fax: 2148-5830)
3. 열람내용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4,068	-	124,068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7호(2002.1.2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경관)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게재생략된 내용(세부 조서,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4. 관계도서 : 일반인 열람 편의를 위해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5.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청 한옥 건축자산과에 서면으로 의견서(열람장소 비치 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람(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2133-8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60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예산안 (1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동의안 (2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추경과 시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
계	52,019,259,132	50,939,359,865	1,079,899,267	2.1
일반회계	37,683,811,046	36,731,113,805	952,697,241	2.6
특별회계	14,335,448,086	14,208,246,060	127,202,026	0.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지은(☎ 02-2133-6808)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예탁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금 반영

나. 운용규모 : 1,949,596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352,400백만원 증가)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구 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 감 (B - A)
계	1,597,196	1,949,596	352,400
용자금 원리금회수	15,250	15,250	-
예수금	1,350,414	1,702,814	352,400
예탁금 원금회수	23,970	23,970	-
예치금회수	144,741	144,741	-
이자수입	62,822	62,822	-

< 지출계획 >				
구 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 감 (B - A)
계		1,597,196	1,949,596	352,400
재무활동	소 계	1,597,189	1,949,589	352,400 (22.1%)
	예수금 원금상환	160,473	158,473	△2,000
	예수금 이자상환	71,282	71,282	-
	예탁금	1,261,800	1,614,200	352,400
	예치금	103,635	105,635	2,0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7	7	-
	기본경비	7	7	-

○ 수입계획 변경

- 예수금 : 1,350,414백만원 → 1,702,814백만원 (증 352,400백만원)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예탁 사항 반영

- 도시개발특별회계 432,528 → 434,928백만원(증 2,400)
- 재난관리기금 0 → 350,000백만원(증 350,000)

○ 지출계획 변경

- 예수금 원리금상환 : 231,754백만원 → 229,754백만원 (△2,000백만원)
 -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제정의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불요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00백만원 → 0(△2,000)

- 예탁금 : 1,261,800백만원 → 1,614,200백만원 (증 352,400백만원)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 | | |
|------------------|---------|--------------------------|
| • 일반회계 | 0 | → 350,000백만원 (증 350,000) |
|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 606,000 | → 613,900백만원 (증 7,900) |
| • 도시철도건설(특) | 398,900 | → 393,400백만원 (△5,500) |

- 예치금 : 103,635백만원 → 105,635백만원 (증 2,000백만원)
-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민영(☎ 2133-681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발행금액 : 3,500억원

○ 필 요 성 :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예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정성민 (☎2133-8033)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